## 경운대학교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

제1조(명칭) 이 센터는 경운대학교 창업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센터는 다양한 창업강좌 콘텐츠 제공, 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및 창업동아리 발굴 지원을 통해 학생중심의 창업교육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12.01.>

제3조(소재지) 센터는 경운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센터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주관부서가 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을 담당한다.

<개정 2020.12.01.>

- 1. 창업강좌 및 창업 5STEP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2. 창업동아리 발굴 및 운영지원
- 3. 창업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 상담 및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
- 4.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실시
- 5. 창업 준비 공간 및 기본 공동기자재 지원
- 6. 창업교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- 7. 창업관련 기술개발, 시제품제작, 특허, 재산권 등 지원
- 8. 기타 센터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

제5조(조직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.

- 1. 센터장
- 2. 운영위원회
- 3. 창업교육지원부
- 4. 창업활동지원부

제6조(센터장의 임명과 임무) ① 센터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창업지원 업무를 주관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 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01.〉
- 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 -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 회의는 매학기 1회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.
- 제8조(인력) ① 센터에는 전문위원, 연구원, 특별연구원, 보조연구원, 연구교수, 전임연구원, 조교 및 계약직 등을 둘 수 있다.

2 제5편 부속기관

② 전문위원, 연구원, 특별연구원, 보조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1. 전문위원 : 본 대학교 산학중점교수
- 2. 연구원 : 본 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
- 3. 특별연구원: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
- 4. 보조연구원 :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
- ③ 계약직원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능력을 갖춘 자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 장이 임용하며, 1년 단위로 임용한다.
- 제9조(기타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기관 및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2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